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현승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2479
----------	-------

발의연월일 : 2023. 6. 5.

발의자 : 이현승 · 김미애 · 정운천

서범수 · 홍석준 · 서병수

박덕흠 · 박성민 · 이주환

정동만 · 최영희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사회복지사업법」, 「초·중등교육법」, 「의료법」 등은 공적인 업무에 종사하거나 공공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의 임용 결격사유로 마약류 중독자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와 달리 현행법에 따른 군인의 결격사유로는 규정되어 있지 않음.

그런데 최근 마약이나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이용한 범죄와 그 오·남용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군내 마약 사건도 증가하고 있는데 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수호를 목적으로 고위험 직무를 수행하고 있어 마약류 중독자를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엄격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를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국방 및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군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경각심

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제2호의2 신설).

군인사법 일부개정 법률안

군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로 인정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0조(결격사유 등) ① (생 략)</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다.</p> <p>1. · 2. (생 략)</p> <p><u><신 설></u></p> <p>3. ~ 8. (생 략)</p> <p>③ (생 략)</p>	<p>제10조(결격사유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p> <p>1. · 2. (현행과 같음)</p> <p><u>2의2.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u></p> <p>3. ~ 8.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